

충남대학교 대학원 환경소재공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5.3.12.]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임산공학과(이하 “학과” 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지도교수가 별도로 정하되,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으로,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②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으로 하고,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응시할 수 있다.

④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①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TEPS 476점 이상
2. TOEIC 600점 이상
3. TOEFL(CBT) 163점 이상
4. TOEFL(iBT) 57점 이상
5. JPT 500점 이상
6. 국제언어교육센터의 영어강좌 60시간 이상

②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거나 국제언어교육센터의 한국어 강좌 60시간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논문지도위원회) ①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재학 중에 3인의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박사학위 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박사학위과정은 논문 2편으로 하되, 학진등재 국내학술지 이상 1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2.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최근 10개 학기의 실적만 인정한다.

②석사학위과정은 학진등재후보 국내학술지 이상에서 1편으로 한다.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임산공학과에서 환경소재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제정된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단, 소속 변경이 없는 학생의 경우 이전 소속학과의 시행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